

규제연구 제16권 제2호 2007년 12월

은행 자회사 규제에 관한 법적 고찰

고 동 원*

은행법 제37조는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정의 및 자회사와의 거래 규제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은행법은 은행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은행은 금융업종 자회사뿐만 아니라 제한적으로 비금융업종 자회사도 둘 수 있다. 은행 자회사 규제와 관련하여 개선할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규정 해석상 은행이 해외 자회사를 둘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를 명확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업종 자회사를 두려고 하는 경우에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가 현행 문구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승인이 필요 없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자회사를 둘 수 있는지 여부가 해석상 나누어지는데, 지점의 성격상 자회사를 두는 것이 맞지 않으므로 입법적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은행의 자회사 정의 규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자산운용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현재의 자회사 정의 기준인 15%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25% 기준으로 하면서 ‘실질적 지배’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핵심용어: 은행 자회사, 금융자회사, 비금융자회사, 금융지주회사, 은행지주회사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번지(e-mail: dwko@konkuk.ac.kr)

** 이 논문은 2006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이 글의 초고를 읽고 좋은 의견을 주신 서울대학교의 박준 교수와 전국은행연합회의 이광진 변호사에게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글의 초고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주셨지만 지금은 고인이 되신 전 금융감독원 진홍수 팀장에게도 감사드리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 글을 바친다.

접수일: 10/1, 게재확정일: 12/17

I. 머리말

은행이 업무를 확대하는 방법은 직접 다른 업무를 겸영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자회사를 설립하여 그 자회사를 통하여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물론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업무 확대 방법(즉 은행이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 산하에 자회사를 두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10월 금융지주회사법이 제정된 이후 은행은 금융지주회사를 통한 대형화·겸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관련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은행이 금융지주회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자회사를 설립하여 증권·보험 등 여러 영역에 진출할 수 있는 길도 있다.

본 연구는 은행법령상 규정하고 있는 은행의 자회사(자은행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을 법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은행법, 동법 시행령, 「은행업감독규정」 및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등의 관련 감독 규정 및 다른 관련 법령(외국환거래법령,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제II장에서는 관련법상의 은행 자회사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고찰하며, 제III장에서는 자은행에 대하여는 자회사에 적용되는 규제 이외에 특별히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 있으므로 별도의 장으로 해서 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제IV장에서는 이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은행 자회사 관련 규제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II. 은행 자회사에 대한 규제 내용

1. 총설

(1) 개관

은행법상 은행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출자지분을 포함함, 이하에서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출자지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의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은행법¹⁾ 제37조 제1항).²⁾ 다만,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에서 정하는 금융업종에 속하는 회사의 경우이거나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 은행이 기존 대출을 출자전환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라 한다)가 승인한 회사의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는데, 은행법은 그러한 회사를 ‘자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다(법 제37조 제2항 본문).³⁾ 따라서 은행의 자회사는 크게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로 나눌 수 있다. 금융자회사로는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자산운용회사, 여신전문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포함된다(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비금융자회사는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가 정하는 금융업종 이외의 회사가 해당된다. 특히 금융자회사가 은행의 경우에는 은행법은 ‘자은행’이라고 정의를 하고 별도의 규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법 제37조 제5항 내지 제8항).⁴⁾ 한편 은행

1) 이하 인용할 때는 ‘법’이라 한다.

2) 정찬형(편집대표), 『주식 금융법(Ⅰ)(은행법)』, 서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p.482(도제문 집필 부분)는 은행법 제37조의 취지를 “은행의 타 회사 소유 지분을 일정 한도 이하로 규제함으로써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은행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산업자본인 비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는 점 및 비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15%까지는 자유로이 소유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연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방지하는 목적인지 의문이 든다. 은행법 제37조의 취지는 은행의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해 둔 규정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이러한 취지의 설명으로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1996. 12, p.39 참조. 오히려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금융산업의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일 것이다(위 심사보고서, p.39). 동법 제24조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검토 내용은 고동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쟁점 분석과 개선 과제.」 『금융연구』 제20권 1호, 한국금융연구원, 2006. 6, pp.23-67 참조(이하 “금산법 논문”이라 한다).

3) 이는 상법상의 자회사 정의 규정에 대한 특칙이다. 이는 은행법 제3조가 은행법이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법상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를 ‘모회사’라고 하고, 그 다른 회사를 ‘자회사’라고 정의하고 있다(제342조의2 제1항).

4) 2002년 4월 은행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은행은 다른 은행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되어 있었으나(개

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에 있어서는 은행법령상의 출자금액 한도 규제 등 여러 가지 규제가 적용된다(법 제37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및 제52조 제1항). 그리고 은행이 자회사에 대하여 출자를 한 때에는 7일 이내에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37조 제4항).

(2) '다른 회사'의 종류 및 외국회사의 포함 여부 문제

은행법 제37조가 명시적으로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뿐만 아니라 의결권이 있는 출자지분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 회사는 주식회사뿐만 아니라 상법상의 합자회사나 유한회사도 포함하게 될 것이다.⁵⁾ 한편, 단지 '다른 회사'라고 하고 있어서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회사도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회사의 대상 범위 및 자산운용 차원에서의 투자 대상의 범위를 고려할 때 외국회사를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해석상 외국회사도 그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성격을 둘 다 갖고 있는 외국법상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도 우리나라 상법상

정 전 은행법 제38조 제9호), 동 개정에 의하여 은행이 다른 은행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5) 상법상 합병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는 주식이 아닌 출자지분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의결권이 있는 출자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지 검토해 보면, 합병회사는 그 대상 회사에 속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는 합병회사의 경우에는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되지 못한다”는 상법 규정(제173조)에 의하여 은행은 합병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으므로 합병회사의 지분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다소 검토를 요한다. 은행이 유한책임사원이 되는 데는 제한이 없으므로 유한책임사원의 지분이 의결권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업무집행권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즉 의결권도 발생한다.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 견해가 나누어진다. 즉 통설에 따르면,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의 업무집행을 할 수 없다”는 상법 제278조는 회사의 내부관계에 불과하므로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에 의하여 유한책임사원에게 업무집행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5, p.536), 이 견해에 따르면 유한책임사원은 의결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법 제278조가 강행규정이라고 보아 정관의 규정으로도 유한책임사원에게 업무집행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3, p.161)에 따르면, 상법상 특별히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 [회사의 조직변경(상법 제286조), 정관의 변경(상법 제269조, 제204조), 해산 결의(상법 제269조, 제227조 제2호)]를 제외하고는 유한책임사원의 의결권은 부정될 것이다. 즉 제한적인 의결권을 갖게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최소한 제한적인 의결권은 가지기 때문에 그 대상 회사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회사 형태는 아니지만 어쨌든 회사 형태이므로 그 범위에 포함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외국회사를 자회사로 두는 경우에는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소 애매한 점은 있으나 외국 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으나, 외국 비금융자회사를 둘 수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회사가 아닌 조합 등의 출자 문제

은행법은 ‘다른 회사’라고 하기 때문에 해석상 투자 대상이 조합 형태인 경우(민법상의 조합이나 상법상의 익명조합)나 우리나라 조합과 유사한 외국법상의 파트너십(partnership)의 경우에는 15%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즉 15% 기준을 초과하여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고, 또한 자회사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입법론적으로는 자산운용의 건전성이나 자회사 관리 측면에서 조합이나 파트너십(partnership) 등을 제외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합이나 파트너십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⁶⁾

(4) 무의결권 주식의 취득 문제

은행법은 명시적으로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은행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없는 주식(예를 들어, 이익배당 우선주)이나 의결권이 없는 출자지분(예를 들어, 업무집행권이 없거나 경영권 행사 권한이 없는 출자지분, 즉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15% 기준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15% 기준 계산 시 그러한 지분은 포함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15%를 초과하여 소유하더라도 자회사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에 대한 은행법령상의 여러 규제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한편, 15% 기준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우선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회사가 되기 위해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의결권이 부활하기 전에 미리 승인을 얻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가 있으나, 주주 각자가 우선 배당을 하지 않을지

6) 미국 은행지주회사법도 ‘회사’의 범위에 파트너십이나 단체(association)를 포함하고 있다. 12 U.S.C. Section 1841(b).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의결권 부활 여부를 미리 알고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사후에 처분하는 방법이 타당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무의결권 우선주는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발행된 것이고, 의결권이 부활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므로 무의결권인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한 이후에 의결권이 부활하였다고 하여 바로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본다. 해결방법으로서 일정한 유예기간(예를 들어, 1년 내지 2년 정도)을 두고 그 기간 동안 의결권 부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이후 일정 기간(예를 들어, 6개월 정도) 이내에 처분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 명확하게 하기 위한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5) 상법 및 다른 금융 관련 법상의 자회사 정의 규정

이하에서는 상법 및 다른 금융관련법상의 자회사 정의 규정을 살펴봄으로써, 은행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다.

1) 상법

상법상 자회사의 정의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경우이다(상법 제342조의2 제1항).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기 때문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하게 되는 점이 다르다. 물론 해석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⁷⁾ 그리고 왜 50%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을 하기가 어렵다고 보이나,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다. 이는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참고⁸⁾하여 그 기준을 정한 것이라고 파악된다.

2) 증권거래법

증권회사의 자회사 정의는 증권회사가 (i)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이하 같다)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ii)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7)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14판, 서울: 박영사, 2007, p.329.

8) 독일(§ 17 abs. 2 AktG), 미국(Model Business Corporation Act §7.21(b)), 프랑스(회사법 제355조)의 경우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위의 책, p.329).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경우, (iii)위의 (i) 또는 (ii)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30%를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인 회사의 경우이다(증권업감독규정 제28조 제6호 가목, 나목 및 다목). 이러한 자회사 기준의 정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범위 대상 회사인 지배회사·종속회사의 정의를 준용한 것이다(법 제1조의2 제2호, 동법 시행령 제1조의3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3) 보험업법

보험회사의 자회사 정의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 포함) 총수의 15%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회사이다(보험업법 제109조 및 제115조).

4) 금융지주회사법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의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즉 의결권이 없는 주식도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최대출자자로서 주권 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40% 이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에는 2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 제2호,9)10)

5) 평가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보험업법을 제외하고는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은 자회사의 정의를 은행과 다르게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차이가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은 매우 어렵다. 이는 각 관련법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라 설명할 수도 있으나, 더욱 설득력 있는 답은 입법 정책의 문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¹¹⁾ 물론 이러한 입법 정책의 판단에 있어서는 과거의 운용 경험 사례(예를 들어, 다른 회사의 경영에 대한 영향력 행사 기준 등) 및 다른 나라의 입법례(예를 들어,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의 '지배'(control) 기준인 25% 기준(12 U.S.C Section 1841(a)(1)) 등]

9)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에 관하여 금융지주회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상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제62조),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정의 규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10) 2007년 4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는 자회사 기준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에는 50% 이상,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는 30% 이상이었다.

11) 이철송, 위의 책, p.329도 "모자관계를 인정하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입법정책의 문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도 참고가 될 수는 있을 것이다.¹²⁾

2. 자회사의 의의 및 유형

(1) 금융자회사의 의의 및 유형

‘금융자회사’는 은행법상 은행이 금융업종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금융업종의 회사를 말한다(법 제37조 제2항). 금융업종 자회사의 유형은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회사 등이 해당된다.¹³⁾ 특히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private equity fund: PEF)의 경우에는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되거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면 자회사로 간주하고 있다(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의2). 즉 은행법 제37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출자지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여야 자회사가 되는데(다시 말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원(업무집행권이 있는 사원 등)으로서 출자총액의 15%를 초과하여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도 업무집행사원이나 무한책임사원이 되는 경우 또는 유

12) 이러한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금융업종의 경우 해당 금융업종 회사의 위험관리 능력이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등이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다.

13)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는 다음과 같은 업종을 열거하고 있다. ①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②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업, ③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업, ④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 ⑤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업, ⑥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업, ⑦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업, ⑧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⑨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정보업, ⑩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업, ⑪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 ⑫은행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전산업 및 금융연구업, ⑬팩토링업, ⑭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 및 자산관리업, ⑮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업, ⑯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업, ⑰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 투자회사업, 투자지문업, 일반사물관리회사업 및 사모투자전문회사업, ⑱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지분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업무, ⑲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8조의2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민간투자대상사업(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통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한한다), ⑳은행의 자기자본 조달업무(당해 은행의 자기자본 조달만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또는 지분총수를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㉑기타 위의 ① 내지 ㉑에 준하는 것으로 금감위가 인정하는 업무.

한책임사원으로서 출자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자회사로 보겠다는 취지인 것이다.¹⁴⁾

좀 더 자세히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는 합자회사의 형태를 취하므로(법 제144조의2 제4항, 제144조의3 제1항),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된다. 상법상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지만(제173조),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은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상법 제173조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법 제144조의3 제4항), 은행은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있다.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 집행은 업무집행사원이 수행하는데, 업무집행사원은 무한책임사원 중 정관에 의해 정해지게 된다(법 제144조의10 제1항). 따라서 무한책임사원 중 업무집행사원이 일반적인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다만,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¹⁵⁾에는 업무집행사원이 아닌 무한책임사원도 의결권을 가진다. 그리고 이 경우 1인당 1의결권이 된다.¹⁶⁾ 따라서 의결권이 있는 출자지분이 15%가 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은행이 업무집행사원이거나 무한책임사원이 되면 바로 자회사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업무집행권이 없으므로¹⁷⁾ 원칙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다만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¹⁸⁾에만 유한책임사원도 의결권을 가진다. 이 경우에도 1인당 1의결권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

14) 따라서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제18호가 규정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업무”라고 하는 것은 금융업종의 일종이라는 의미에 그치고,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 결정권이 있는 출자지분의 15%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없어질 것이다. 그러나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의2가 특례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금융업종의 하나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15) 예를 들어, 정관에 따라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을 타인에 양도하는 경우(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14 제2항 단서), 정관의 변경(상법 제204조), 해산 결의(상법 제227조 제2호) 등을 들 수 있다.

16) 이에 대해서는 정관에 사원의 출자금액 또는 출자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갖게 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는 이 지분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윤희웅·이진국,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합자회사 형태에 따른 법적 문제점」, 『BFL』제10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5. 3, p.20 참조.

17)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업무집행권이 없다는 근거로서는 ①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권은 무한책임사원 중에서 정관에 업무집행사원으로 정한 무한책임사원이 갖는다는 규정(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10 제1항) 및 ②유한책임사원은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재산인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규정(동법 제144조의3 제5항)을 들 수 있다.

18) 총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는 무한책임사원의 경우와 같다. 즉 정관의 정함에 따라 무한책임사원의 지분을 타인에 양도하는 경우(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144조의14 제2항 단서), 정관의 변경(상법 제204조), 해산 결의(상법 제227조 제2호) 등을 들 수 있다.

서 제한적인 의결권을 갖고 있는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30% 기준으로 자회사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여튼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 판단 기준인 15% 기준에 예외가 적용되는 것이다.

그리고 금융업종 자회사의 범위에는 자은행도 포함되므로 자은행에 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자회사”라고 하는 경우에는 자은행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법상 자은행을 제외한 금융자회사를 두려고 하는 경우에는 금감위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후술하는 것처럼 견해가 나뉠 수 있지만, 금감위 승인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비금융자회사의 의의 및 유형

은행법상 ‘비금융자회사’는 은행이 기업구조조정 촉진 목적으로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비금융업종의 자회사를 말한다(법 제37조 제2항). 비금융자회사의 범위는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가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종 이외의 회사를 말한다(은행업감독규정 제51조 제1항).

한편, 금감위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행업감독규정은 명시적으로 추가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51조 제1항 본문). 한편,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수 또는 출자지분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15% 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가? 은행업감독규정은 그러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51조 제1항 단서).

3. 자회사에 대한 출자액 한도 규제

은행이 자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령상의 출자액 한도 규제가 적용된다. 다시 말해서 아무런 제한 없이 무한정 자회사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해 은행법령은 크게 두 가지 한도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모든 자회사(즉 자은행도 포함한 금융자회사 및 비금융자회사)에 대한 출자 총합계액은 당해 은행 자

기자본¹⁹)의 15% 이내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법 제37조 제2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이 경우는 아래 두 번째 경우와 달리 당해 은행이나 자회사에 요구되는 경영실태 평가등급 요건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다음과 같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모든 자회사에 대한 출자 총합계액²⁰)이 은행 자기자본의 30% 이내까지 출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i)당해 은행의 경영실태 평가등급 결과가 1등급 또는 2등급이면서, 전년 말 현재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고, 전년 말 현재 원화유동성비율이 100% 이상이며, (ii)이미 출자한 금융자회사의 경우(비금융자회사는 적용되지 않는다)에 금융자회사의 경영실태 평가등급 결과²¹)가 1등급 내지 3등급이 되는 요건(법 제37조 제2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제1항)을 충족하면, 모든 자회사에 대한 출자 총합계액이 은행 자기자본의 30% 이내까지는 출자할 수 있다.²²) 그리고 은행이 자회사로부터 준비금 또는 재평가적립금의 자본 전입에 따라 발행된 주식을 교부받거나 이익배당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위의 (i) 및 (ii)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제2항).

4. 자회사에 대한 권리 및 경영실태 평가

¹⁹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은 은행으로 하여금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를 하도록 하

-
- 19) ‘자기자본’이라 함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 합계액”을 말한다(은행법 제2조 제1항 제5호). ‘기본자본’(core capital)은 “자본금·내부유보금 등 은행의 실질 순자산으로서 영구적 성격을 지닌 것”을 말하며, ‘보완자본’(supplementary capital)은 “후순위채무(subordinated debts) 등 기본자본에 준하는 성격의 자본으로서 은행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2).
 - 20) 이 경우 원본 보전 약정이 있는 신탁계정의 출자액을 포함한다(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제3항). 그런데 은행 자기자본의 15% 기준에서 자회사에 대한 출자 총합계액의 경우에는 은행법령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30% 기준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원본 보전 약정이 있는 신탁계정의 출자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법령에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 21) 은행 자회사의 경영실태평가 결과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하며, 평가등급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제4항).
 - 22) 다만, 법령의 규정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와 금감위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30% 출자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제3호 단서).

고 있다. 즉 은행은 자회사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대한 경영평가를 매년 실시하는 등 자회사 업무를 적절히 지도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여야 한다(제34조). 이외에도 금융감독원은 금융자회사에 대하여 경영실태 평가를 하는 등(비금융자회사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은행업감독규정 제50조 제4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3조 및 <별표 13>) 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은행은 자회사에 대하여 신규 출자(신규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 포함)를 하거나 지분율이나 자본금 등 출자 현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금감위에 보고하여야 한다(법 제37조 제4항,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6조).

5. 자회사와의 거래 규제

은행과 자회사는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이 많고, 또한 관계 회사 간의 부당지원에 따른 공정성의 훼손 가능성 등이 있기 때문에, 은행법은 자회사와의 거래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고 있다. 여기서 자회사는 자은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회사와의 거래 규제에 관해 은행법이 특별히 자은행을 배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법 제37조 제3항 참조).

(1)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우선 은행은 당해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²³⁾ 한도 제한을 받는다. 즉 은행은 원칙적으로 자회사 각각에 대하여는 당해 은행 자기자본의 10%, 자회사 전체에 대하여는 당해 은행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법 제37조 제3항 제1호, 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 제1항 본문). 다만, (i)은행 이사회에서 합병하기로 결의한 자회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나 (ii)은행 공동으로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자회사에 대하여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위의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있다(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 제1항 단서). 은행이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23) ‘신용공여’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 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은행]의 직간접적 거래”를 말한다(법 제2조 제1항 제7호). 구체적인 신용공여의 범위는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 은행업감독규정 제3조 및 <별표 2>에 규정되어 있다.

불구하고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여²⁴⁾ 위의 10%, 20% 한도를 각각 초과하게 된 때에는 이를 적합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한도 초과일로부터 1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 제2항). 또한, 은행은 자회사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를 해서는 안 된다(법 제37조 제3항 제2호). 그리고 은행은 금감위가 정하는 소액대출²⁵⁾을 제외하고는 자회사의 임원과 직원에 대하여 대출을 해서는 안 된다(법 제37조 제3항 제3호).

한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와 관련하여 은행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35조의2가 자회사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즉 은행법 제35조의2는 대주주(법 제2조 제1항 제10호) 및 그 대주주의 특수관계인(법 시행령 제1조의4)²⁶⁾에게 할 수 있는 신용공여의 금액을 제한하고 있는데, 은행의 자회사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도 은행법 제35조의2가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이다.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은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제37조를 적용하면 충분하고, 은행법 제35조의2의 취지가 이러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까지 포섭하려는 것으로 보기가 어려운 점, 그리고 은행에 대주주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자회사에 대한 거래가 달리 규제되는 문제점 등을 감안할 때, 형식적으로는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은행법 제35조의2를 은행의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에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해 더욱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
- 24) ①환율 변동에 따른 원화 환산액의 증가, ②당해 은행의 자기자본 감소, ③자회사 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도, ④지급보증대지급금 발생, ⑤금리 상승에 따른 사채지급보증액 증가, ⑥은행 대차대조표 계정과목의 변경, ⑦신용공여의 범위 변경, ⑧비금융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 제2항).
- 25) 일반자금 대출의 경우 2천만 원(급부 포함) 이내, 주택자금 대출(일반자금 대출 포함)의 경우 5천만 원 이내를 말한다(은행업감독규정 제53조 및 제56조 제1호, 제2호).
- 26)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4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자회사와의 거래 행위 규제

은행은 자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의 조건(arms-length terms)에 따라야 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즉 (i)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를 우대하는 행위, (ii)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를 부담하는 행위, (iii)자회사 경영의 독립성 및 건전성을 침해하는 행위, (iv)자회사 또는 고객에게 이익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를 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v)업무상 지득(知得)한 고객에 대한 정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자회사에 제공하거나 자회사로부터 제공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 제3항). 이 외에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의 건전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은행과 자회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 제4항).²⁷⁾

6. 해외 현지법인 자회사 신설 시 금융감독 당국과의 협의

은행법상 은행이 외국에 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신설 계획을 작성하여 금감위와 ‘협의’하여야 한다(법 제13조).²⁸⁾ 이에 근거하여 ‘은행업감독규정. 은 은행이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지점 및 국외 사무소와 국외 지역에 소재하는 자회사(“현지법인”이라고 정의하고 있음)²⁹⁾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계획을 제출하여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은행업감독규정 제13조).³⁰⁾

27) “자회사와의 거래 제한 조치는 불이익 부과 처분이므로 모은행과 자회사의 거래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더 명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진홍수, “최근 은행법상의 주요 법적 이슈 검토 (자료), 『은행법연구』 제2집, 은행법연구회, 2006. 12, p.157 참조.

28)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에 따르면, 은행이 국외지점, 국외사무소 또는 현지법인의 신설 계획 협의 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로서, ①국외지점·현지법인의 경우 국외지점·현지법인 신설 계획서(진출 형태, 설치 지역, 설치 목적, 주요 취급 업무, 설치시기 등), ②국외사무소의 경우에는 국외사무소 신설 계획서(설치 지역, 설치 목적, 주요 업무 활동, 설치시기, 지점 또는 현지법인 전환 계획 유무 등), ③진출국 감독당국의 업무규제 내용 및 외국은행 영업현황이 있다(동 세칙 제9조 제1항 및 <별표 2>).

29)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자회사’는 은행법 제37조가 규정하는 자회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0) 이와 관련하여 은행법은 외국에서 지점 등을 신설하는 경우만을 사전 협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지법인 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라 금감위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지만, 현지법인 은행 설립·인수 시에도 은행법에 의한 사전 협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현지법인 은행의 설립·인수의 경우에도 사전 협의 대상임을 은행법에 명확하게 규정

따라서 해외 자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37조상으로는 금감위 승인이 필요 없지만, 은행업감독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금융감독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런데 기존 해외 회사를 인수하여 현지법인화하는 경우에도 설립 시와 마찬가지로 보아 금융감독원장과 협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은행법 및 은행업감독규정상 “신설”이라는 의미가 새로 설립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회사의 인수까지 포함하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하건대, 현지법인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나 기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여 현지법인화하는 것을 굳이 구분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기존 회사의 인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³¹⁾ 그러나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인수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문구(예를 들어, 새로운 현지법인 설립과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취득으로 인한 현지법인화)로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7. 외국환거래법령상의 규제: 해외 금융자회사 설립시 재정경제부장관에 대한 사전 신고

은행이 해외 자회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도 적용된다.³²⁾ 외국환거래규정 제9-10조는 “금융기관이 금융·보험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³³⁾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³³⁾ 은행은 금융기관에 속할 것이고, 다만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가 규정하고 있는 금융업종이 “금융·보험업”에 다 포함될지는 외국환거래규정이 정의를 하고 있지 않아 다소 불명확점이 있지만 “금융·보험업”의 범위를 넓게 보아³⁴⁾ 포함된다고 보아도 큰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정찬형(편집대표), 앞의 책, p.160(진홍수 집필 부분)). 타당한 주장이라고 본다. 같은 견해로는 고동원, 『금융 선진화의 기반 구축을 위한 은행법상 및 가지 규제의 개선 방안』, 『기업법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06. 6, p.295(이하 “금융선진화 논문”이라 한다).

- 31) 정찬형(편집대표), 앞의 책, p.160(진홍수 집필 부분)도 “현지법인 은행 설립·인수 시에도…사전 협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본다”라고 하고 있다.
- 32) “해외직접투자”의 정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데,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15%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것은 이에 해당된다.
- 33) 당해 현지법인의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등 일정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외국환거래규정 제9-10조 제1항).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 즉 은행이 해외 금융자회사를 신설하거나 주식을 인수하여 현지법인화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령상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사전 신고를 하여 수리를 받아야 할 것이다.³⁵⁾

8.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금융감독 당국 승인 문제

한편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르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20% 이상을 취득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사실상 지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이 자회사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산법상의 승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하에서는 국내 금융자회사의 경우와 해외 금융자회사의 경우가 서로 다르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국내 금융자회사의 경우

은행이 국내 자회사를 두는 경우(즉 자회사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주식을 인수하여 자회사를 두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금산법 제24조상의 금감위 승인이 필요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금산법 제24조에 의하면, 동일계열 금융기관(은행이 포함됨)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즉 (i)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ii)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소유하면서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속하는 기업집단이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³⁶⁾’에는 금감위 승인을 얻어야 한다(여기서는 은행법과 달리 출자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다만, 금융기관의 해당

34) 그 범위가 상당히 넓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35) 은행법상 해외 비금융자회사를 둘 수 있다고 본다면, 외국환거래규정상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으면 된다(제9-5조).

36) ‘시행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①주식 소유 비율이 제1위에 해당하거나 또는 ②주식의 분산도로 보아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을 말한다(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설립 근거법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얻은 경우에는 금산법상의 별도의 금감위 승인은 필요 없다(금산법 제24조 제1항 단서).

따라서 뒤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은행법 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은행이 금융업종의 자회사를 두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감위 승인이 필요 없는데(다만, 자은행의 경우에는, 뒤에서 논하는 것처럼, 은행법 제15조에 따라 금감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³⁷⁾ 이런 경우에도 금산법상의 승인이 필요한지가 문제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은행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상 금감위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여 금산법상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것 아니냐 하는 논의의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i)해당 설립 근거법에서 일정 한도를 넘는 경우에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은 금융감독 당국의 인가나 승인을 얻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점, (ii)해당 설립 근거법에서 인가·승인 등을 얻은 경우에 금산법상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더욱이 해당 설립 근거법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금산법상의 승인도 필요 없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제24조 제1항 단서 조항과 같게 취급을 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³⁸⁾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립 근거법상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 첫째, 금융기관 해당 설립 근거법상의 주식 소유 규제 목적과 금산법상의 주식 소유 규제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즉 금융기관 해당 설립 근거법상의 주식 소유 규제 목적은 자산 건전성의 규제인 반면에, 금산법상의 주식 소유 규제 목적은 금융기관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의 규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해당 설립 근거법에 따라 자산 운용 한도 이내이거나 한도를 넘더라도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는 해당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지배력 확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규제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설령 해당 설립 근거법상 감독당국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금산법상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이다.³⁹⁾

둘째, 금융기관 해당 설립 근거법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 없이 주식을 소유하는

37) 그 반대의 견해도 있다(윤희웅·이진국, 앞의 논문, p.22).

38) 고동원, 앞의 논문(금산법 논문), p.55 참조

39) 위의 논문, p.56

행위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금산법상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보면 실질적으로 금산법의 존재 의의가 없기 때문이다. 금산법 제24조 제1항 단서 조항의 취지는 해당 설립 근거법에 의해서 금융감독 당국의 인가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금융감독 당국이 자산 건전성 규제의 측면과 지배력 확장 규제의 측면을 모두 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금산법상의 승인을 받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금융기관 설립 근거법에서 인가나 승인을 얻은 경우에 별도의 금산법상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금융기관 설립 근거법에서 인가나 승인을 얻지 않는 경우에도 금산법상의 승인을 얻지 않도록 한다면 금융기관을 이용한 지배력 확장을 규제할 방법이 없어지는 문제점이 있다.⁴⁰⁾

셋째, 금산법 제24조 제1항 단서가 “당해 금융기관의 설립 근거가 되는 법률에 의하여 인가·승인 등을 얻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설립 근거법에서 적극적인 인가 등의 행위를 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문언 해석상 해당 설립 근거 법률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얻지 않은 경우”에는 금산법상 제24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⁴¹⁾

결론적으로 해당 금융기관 설립 근거법에서 감독당국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도 금산법상의 승인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⁴²⁾ 금융감독 당국도 이런 입장에서 금융기관 해당 설립 근거법에서 금감위의 승인이 필요 없는 경우에도 별도의 금산법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보고 실무상 그렇게 처리하고 있다.⁴³⁾ 따라서 은행이 금융업종의 자회사를 두는 경우에 은행법상의 승인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금산법상의 승인 요건에 해당하면 금감위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다. 물론 비금융업종의 자회사를 두는 경우에는 은행법상 승인을 요하므로 금산법상의 승인은 필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은행이 금융업종 자회사를 두는 경우에 구체적으로 언제 금산법상의 승인이 필요한가? 우선 은행이 동일계열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업종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

40) 위의 논문, p.56

41) 위의 논문, p.56

42) 위의 논문, p.56

43)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우리은행의 우리제일호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한 출자 승인』, 보도자료, 2004. 12. 24, p.1.

주식 총수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이다(예를 들어, 25% 소유의 경우)(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1호).⁴⁴⁾ 두 번째는 은행이 동일계열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업종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5% 초과하면서 20% 미만으로 소유하는 경우(예를 들어, 17% 소유의 경우를 들 수 있다. 15% 기준이 나오는 것은 은행법상 자회사 기준이 15% 기준이기 때문이다)에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그 소속 기업집단이 최대주주가 되거나 또는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⁴⁵⁾이다(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반면에 은행이 금융업종 자회사를 두는 경우에 금산법상 금감위 승인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은행이 동일계열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업종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15% 초과 20% 미만으로 소유하면서 은행을 포함한 동일계열 금융기관 또는 그 소속 기업집단이 최대주주가 아니면서 주주권 행사에 의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이다(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참조).

(2) 해외 금융자회사의 경우

은행이 해외 금융업종 자회사를 두는 경우에는 은행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상 금감위의 승인이 필요 없지만, 은행법 제13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3조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를 하게 된다.⁴⁶⁾ 따라서 금산법 제24조상의 ‘다른 회사’의 범위에 해석상 외국회사도 포함된다고 보는 경우, 금융감독원과의 ‘협의’가 금산법이 규정하고 있는 금융기관 해당 설립 근거법상의 ‘인가·승인 등’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즉 ‘협의’가 ‘인가·승인 등’에 포함된다고 보면 금산법상의 별도의 승인이 필요 없지만, 포함되지

44) 다만, 주의하여야 할 것은 금산법은 은행법과 다르게 출자지분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제24조 제1항). 따라서 해석상 다른 회사의 출자지분을 20% 이상 소유하고 있어도 금산법상 승인은 필요 없다고 보게 된다. 물론 은행업감독규정이 주식의 범위에 출자지분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제54조) 실무상 출자지분도 포함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법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하위 규정에 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의문이다.

45) “지배관계가 형성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금산법 및 동법 시행령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대상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당해 회사의 업무집행이나 주요 의사결정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고동원, 앞의 논문(금산법 논문), p.63).

46) 앞서 언급한 것처럼, 관련 규정상은 해외 현지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만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석상 주식을 인수하여 현지법인화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두 가지 경우를 다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않는다고 보면 위 국내 금융자회사의 경우에서 논한 것처럼, 금산법상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협약’의 법적 성격을 “감독당국의 동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⁴⁷⁾ 사실상 승인과 같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법 제13조 및 은행업감독규정 제13조는 ‘협약’의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승인이 일반적으로 그 요건 및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과 비교할 때 ‘협약’이 승인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현재 실무상 은행의 해외 자회사 설립 시 금산법상의 승인 없이 은행법상의 협약만으로 하는 것은 ‘협약’을 승인으로 보거나, 아니면 금산법상의 ‘다른 회사’의 범위에 외국회사는 제외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석에 의존하기보다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즉 금산법상의 ‘인가 승인 등’의 범위에 ‘협약’도 포함하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거나, 금산법 제24조의 ‘다른 회사’의 범위에 외국회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도록 하는 것이다.⁴⁸⁾ 특히 금산법 제24조의 취지(즉 금융기관의 지배력 확장을 막고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지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를 감안할 때 그러한 폐해를 가져올 가능성이 거의 없는 외국회사까지 규제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⁴⁹⁾ 금산법 제24조의 ‘다른 회사’의 범위에 외국회사가 제외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는 입법적 해결을 도모하는 것이 더욱 근원적인 해결책이라고 본다.⁵⁰⁾

III. 자은행에 대한 규제 내용

은행법은 은행을 자은행으로 둘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특별히 자은행에 대한 거래 규제를 더 강화하고 있다. 그 이유는 동일 업종을 영위하는 기관이므로 다른 금융자회사에 비해 모은행과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강화된 규제 요건을 적용

47) 정찬형(편집대표), 앞의 논문, pp.159-160(진홍수 집필 부분).

48) ‘협약’ 제도를 ‘신고’ 제도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고동원, 앞의 논문(금융선진화 논문), p.295.

49) 고동원, 앞의 논문(금산법 논문), p.64.

50) 유권해석기관인 재정경제부도 다른 회사의 범위에 외국회사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재정경제부의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의견 회신, 2003. 11. 29).

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하에서는 자은행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자은행의 의의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15%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다른 은행을 자(子)은행이라고 하며, 당해 은행을 모(母)은행이라고 한다(법 제37조 제5항 전단). 또한 은행법은 모은행과 자은행이 합하여 자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은행은 당해 모은행의 자은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37조 제5항 후단).

2. 자은행과의 거래 제한

모은행과 자은행과의 거래에 대해서는 은행과 다른 자회사와의 거래 제한보다 더 강화된 제한을 가하고 있다.

(1) 자은행의 모은행 및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자은행은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여 모은행 및 당해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법 제37조 제6항 제3호). 즉 (i)자은행은 모은행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할 수 없으며, (ii)자은행은 다른 자은행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은행 자기자본의 10% 이내에서 해야 하며, (iii)자은행의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의 총합계액은 당해 자은행 자기자본의 20% 이내이어야 한다(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⁵¹⁾

51) 다만, ①자은행이 모은행 관계를 형성하기 이전에 이미 모은행에 신용공여를 한 경우, ②자은행이 모은행의 새로운 자은행에 대하여 이미 다른 자은행의 신용공여 기준인 당해 자은행 자기자본의 10% 및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총합계액 기준인 당해 자은행 자기자본의 20% 한도를 초과한 경우, ③환율 변동에 따른 원화 환산액의 증가, 당해 자은행의 자기자본의 감소, 다른 자은행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수 또는 기타 금감위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자은행의 신용공여 기준(모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다른 자은행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기준인 자기자본의 10%, 다른 자은행에 대한 총 신용공여 한도인 자기자본의 20% 기준)에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은행의 신용공여 규모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2) 자은행의 모은행 및 다른 자은행의 주식 소유 제한

자은행은 모은행 및 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다(법 제37조 제6항 제1호). 다만, (i)자은행이 모은행의 새로운 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ii)모은행의 새로운 자은행이 당해 모은행 또는 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경우, (iii)상법 제342조의2 제1항의 규정(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자은행이 모은행 및 다른 자은행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은행을 흡수합병하거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또는 자은행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하여 자은행이 모은행 및 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예외이다(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이러한 예외의 경우에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본문). 다만, 금감위는 자은행이 소유한 주식 규모, 증권시장의 상황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 단서).

(3) 자은행의 다른 은행 주식 소유 제한

자은행은 다른 은행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법 제37조 제6항 제2호). 예외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은행은 손자은행을 둘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자은행의 모은행 및 다른 자은행의 주식 담보 신용공여 금지

은행법 시행령은 자은행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거나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자은행이 모은행 및 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담보로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법 제37조 제6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7항 제1호 전단).⁵²⁾ 이는 자은행이 모은행이나 다른 자은행의 주식을 담보로 취득하여 신용공여를 해주는 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가 상환을 하지 못할 때에는 모은행이나 다른 자은행의 주식을

경우 금감위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 단서, 제21조 제6항).

52) “모은행 등이 발행한 주식을 담보로 하거나...”로 되어 있어서 “신용공여”에 연결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나...”로 문구를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법 제37조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

취득하게 되는데, 이는 자은행의 모은행 및 다른 자은행의 주식 취득 금지 규정(법 제37조 제6항 제1호)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5) 자은행의 모은행 및 다른 자은행의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신용공여 금지
은행법 시행령은 자은행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거나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자은행이 모은행 및 다른 자은행이 발행한 주식을 매입하기 위한 신용공여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제7항 제1호 후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용공여를 받은 자가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모은행 및 다른 자은행의 주식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어서⁵³⁾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6) 자은행의 모은행 및 다른 자은행의 임직원에게 대한 대출 제한

은행법 시행령은 자은행의 건전 경영을 저해하거나 금융거래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하나로서 자은행이 모은행 및 다른 자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감위가 정하는 소액대출⁵⁴⁾을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다(제21조 제7항 제2호). 이는 모은행이나 다른 자은행의 임직원은 자은행의 이해관계자가 되므로 그러한 이해관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금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⁵⁵⁾

(7) 자은행과 모은행 및 다른 자은행과의 상호 신용공여 시 적정 담보 확보 의무

자은행과 모은행 및 다른 자은행 상호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법 제37조 제7항). 즉 자은행이 모은행이나 다른 자은행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신용공여 금액의 150% 범위 내에서 유가증권·부동산 등 담보의 종류에 따라 금감위가 정하는 비율⁵⁶⁾ 이상의 담보

53) 신용공여를 받은 자가 지급불능이나 파산 등의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54) 일반자금 대출의 경우 2천만 원(급부 포함) 이내, 주택자금 대출(일반자금 대출 포함)의 경우 5천만 원 이내를 말한다(은행업감독규정 제53조 및 제56조 제1호, 제2호).

55)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은행법해설』, 1993, p.184.

56) ①예·적금, 정부 및 한국은행에 대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보증한 채권, 정부 및 한국은행이 발행

를 확보하여야 한다(법 시행령 제21조 제8항 본문). 이 규정은 모은행 및 자은행의 건전성 강화뿐만 아니라 모은행과 자은행과의 부당한 거래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당해 자은행과 모은행 및 다른 자은행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금감위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담보 확보 의무가 면제된다(법 제37조 제7항 단서).

(8) 자은행과 모은행 및 다른 자은행과의 상호간 불량자산 거래 제한

자은행과 모은행 및 다른 자은행 상호간에는 은행업감독규정이 정하는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른 ‘요주의’ 이하의 불량자산을 거래해서는 안 된다(법 제37조 제8항 본문,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9항, 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의5 제1항). 다만, 당해 자은행과 모은행 및 다른 자은행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감위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량자산 거래 금지 의무가 면제된다(법 제37조 제8항 단서). 이러한 거래 제한은 모은행 및 자은행의 건전성 강화와 모은행과 자은행과의 부당 거래를 방지하는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자은행 설립 시 은행법상 주식 한도 초과 보유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 문제

(1) 문제제기

은행법 제37조의 해석상 금융자회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금감위 승인이 필요 없다. 그러면 금융자회사에 포함되는 자은행을 두는 경우(즉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 은행을 인수하는 경우를 다 포함한다)에 아무런 승인 없이 의결권이 있는 주식 15%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은행법상 일정 한도를 초과하여 은행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경우는 담보 비율이 100%, ②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다만,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에 한한다),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투자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공공기관 등”)에 대한 채권, 공공기관 등이 보증한 채권, 공공기관 등이 발행 또는 보증한 증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의 경우는 담보 비율이 110%, ③① 및 ② 이외의 자산의 경우는 담보 비율이 130%이다(은행업감독규정 제52조의4).

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법 제15조),⁵⁷⁾ 이 규정이 적용되느냐 하는 문제이다.

(2) 검토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자회사의 경우 은행법 제37조에 따라 별도의 금감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금융자회사에 속하는 자은행의 경우도 금감위의 별도 승인이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있으나, 그렇게 볼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은행법 제15조의 해석상 은행이라고 해서 특별히 금감위 승인이 필요 없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특히 한도 초과 보유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의 규정을 보더라도 명시적으로 은행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법 시행령 제5조 및 <별표> 한도초과보유 주주의 초과보유요건, 은행업감독규정 제15조 및 <별표 2-2>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초과보유요건)⁵⁸⁾ 등을 감안할 때, 자은행을 두려고 하는 경우에 은행법 제15조에 따른 금감위의 한도 초과 보유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금산법상의 금감위 승인은 필요 없게 될 것이다.

IV. 은행 자회사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해외 자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

(1) 문제제기

은행의 자회사 범위에 해외 자회사도 포함되는가? 은행법 제37조는 “다른 회사”라고만 하고 있고, 금융자회사의 유형에 해외 자회사가 포함되는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이다(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 참조). 특히 은행이 해외 비금융자회사도 둘 수 있는지는 더욱 불분명한 점이 있다. 물론 은행법 제37조가 단지 “다른 회사”라고 하고 있기

57) 원칙적으로 시중은행(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의 경우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 지방은행의 경우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총수 15%를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금감위 승인을 얻어야 한다.

58) 예를 들어, 재무건전성 요건에서 은행의 경우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어야 한다.

때문에 해석상 15%까지는 해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자산운용(portfolio) 차원에서 자유로이 투자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로 나누어 살펴본다.

(2) 검토

1) 금융자회사의 경우

우선 해외 금융자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2004년 3월 30일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은행법(해외 관련법령을 포함한다. 이 조문에서 같다)에 의한 은행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해외 금융자회사도 포함하는 것이 명확하였으나, 개정법에 의하여 “해외 관련법령을 포함한다”라는 문구가 삭제되고 제49조 제20호에 “제1호 내지 제19호에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업무”가 추가되면서 해외 금융자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명확해졌다. 개정 취지에 따르면, “은행의 자회사 업종을 국내 금융 관련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업을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은행이 현지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 관련 법령의 차이로 인해 자회사 업종 해당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국내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⁵⁹⁾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을 했다고 하는데, 동 규정 제49조 제20호 문구에 의하여 해외 금융자회사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상당한 의문이다. 제20호의 문구는 건별로 금감위가 금융자회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하겠다는 것인데,⁶⁰⁾ 이것은 금감위에 과도한 재량권을 주는 것이 되고, 또한 판단 기준이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 불안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금융자회사의 판단에 있어서 감독당국이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그러한 문구를 추가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불명확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 특히 명백히 국내 금융업종에 속하는 해외 회사(예를 들어, 은행, 증권회사 등)까지도 국내 금융업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제20호의 문구상 금감위가 건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59) 금융감독원 사이트 규정 변경 예고 162번, 2004년 3월 12일자, www.fss.or.kr에서 검색 가능.

60) 정찬형(편집대표), 앞의 논문, p.160 각주 19)(진홍수 집필 부분)도 “해외 현지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가 자회사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별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명백히 국내 금융업종에 속하는 해외 회사(예를 들어, 은행, 증권회사 등)를 자회사로 두려고 하는 경우까지 금융감독 당국이 사안별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 이는 문제이다.

해석도 가능한데, 이 경우에는 더욱 문제다. 종전처럼 해외 금융관련법령을 포함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면서 해외 자회사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타 제1호 내지 제19호에 준하는 것으로 금감위가 인정하는 업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의 개정 취지에 따르면, 해외 회사가 “국내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49조 제20호를 신설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과연 “이에 준하는 업무”의 범위에 국내 해당 업종이 없는 회사까지 포함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여전히 국내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를 영위하는 해외 회사를 자회사의 범위에 두려면 은행업감독규정의 개정을 통하여 포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비금융자회사의 경우

은행이 비금융업종의 해외 자회사도 둘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비금융업종의 자회사는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가 규정하는 금융업종 이외의 회사를 말한다(은행업감독규정 제51조 제1항). 은행법 제37조 제2항이 비금융업종 자회사를 둘 수 있는 경우를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비록 이론적으로는 해외 기업의 경우에도 투자한 회사의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해외 비금융업종 자회사를 둘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비금융자회사의 허용 취지가 국내 기업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출자전환 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것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해석상 해외 비금융자회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⁶¹⁾ 물론 자회사 기준인 15%까지는 해외 비금융업종 회사의 지분을 자유로이 취득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 촉진 목적의 대상이 반드시 국내 기업에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로 해외 비금융업종 회사도 자회사로 둘 수 있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비금융자회사의 허용 취지를 감안할 때 그렇게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61) 고동원, 앞의 논문(금융선진화 논문), pp.293-294.

(3) 소결 - 제언

결론적으로 은행이 금융업종 해외 자회사를 둘 수 있는지 여부가 문구상 애매하므로 은행업감독규정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비금융업종 해외 자회사도 둘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으므로 은행법에서 비금융업종 해외 자회사를 배제하는 문구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은행법상 금융자회사(자은행 제외) 설립 시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규정 정비⁶²⁾

(1) 문제제기

은행 자회사 규정과 관련하여 은행법 제37조 제2항은 “[은행]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감위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감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법문의 해석상 금감위가 정하는 금융업종, 즉 금융자회사의 경우에도 금감위 승인이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아 문제가 있다. 다만 자은행의 경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은행법 제15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그 경우에는 이 논의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2) 검토

은행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금융자회사의 경우에도 금감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⁶³⁾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자회사의 경우에는 금감위 승인이 필요 없는 것으로 보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된다.⁶⁴⁾ 그 근거는 은행 자회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감독규정을 들 수 있다. 즉 비금융자회사에 대하여

62) 위의 논문, pp.299-300; 고동원, 앞의 논문(금산법 논문), pp.35-36.

63) 윤희웅·이진국, 앞의 논문, p.22. 동 논문은 은행법상 금융자회사의 경우에도 금감위 승인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즉 “은행은 원칙적으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의결권을 15% 이상 가질 수 없고, 15%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기 위하여서는 금감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참고로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가 규정하는 금융업종 자회사에 속한다).

64) 금융감독원 조사연구국, 금융감독정보 제2002-33호(2002. 8. 19-24), p.16은 “금감위 규정(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상 자회사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은행법상의 금감위 승인 불요”라고 서술하고 있다.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감독규정 제51조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금융자회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는 금감위의 승인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생각하건대, 비금융자회사의 경우에는 은행이 비금융업종 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금융과 산업의 분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닌바, 은행이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취지로 보이므로 이 경우에 금감위 승인을 얻도록 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보이나, 금융자회사의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금감위 승인이 필요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금융자회사의 경우에는 금감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소결 - 제언

그러나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현행 조문의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즉 현행 문구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필요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회사의 경우에는...” (필자 강조)으로 수정함으로써 금감위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3. 외국은행 국내 지점도 자회사를 둘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규정의 명확화

(1) 문제제기

은행법상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하 “외은지점”이라 한다)도 국내 은행으로 간주하기 때문에(법 제59조 제1항 전단), 외은지점도 은행법 제37조가 적용되어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2) 검토

이에 대해서는 자회사를 둘 수 있다는 견해와 그렇지 않다는 견해로 나뉜다. 우선 자회사를 둘 수 있다는 견해는 (i)은행법은 외은지점이 자회사를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 (ii)은행법상 외은지점도 국내 은행으로 간주되므로 은행법 제37조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 경우는 결국 외은지점의 본점이 자회사를 두게 되는 것으로 보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해 자회사를 둘 수 없다는 견해는 (i)은행법상 금지 규정이 없지만 관련 규정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가 명시적으로 자회사에 관련되는 규정(즉 동 세칙 33조 내지 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회사 경영실태 평가, 자회사 관리, 자회사 출자보고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점(즉 외은지점이 자회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배제하고 있는 점),⁶⁵⁾ (ii) 「외국인투자촉진법」은 국내 지점을 폐쇄하여 국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지점의 청산자금으로만 출자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제2조 제7호 마목)을 감안할 때 반대 해석으로 지점의 청산자금 이외의 자금으로는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국내 지점이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결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투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투자할 수 있게 되어 불합리하다는 점, (iii)외은지점의 경우 본점의 자본금이 아닌 금감위가 인정하는 영업기금을 자본금으로 의제하고 있어서(은행법 시행령 제26조) 국내 은행의 경우와 다르다는 점, (iv)독립적 법인격이 없는 지점 자체가 자회사를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지점의 성질상 허용하기가 어렵다는 점⁶⁶⁾ 등을 들 수 있다. 금융감독 당국도 외은지점은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3) 소결 - 제언

지점의 성질을 고려하여 상위법은 아니지만 하위 규정인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 명시적으로 자회사 관련 규정을 적용 배제하고 있는 점⁶⁷⁾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규정 등을 고려할 때 외은지점은 자회사를 소유할 수 없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본

65) 금융감독 당국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가 외은지점에 대해 은행의 금융채 발행에 관한 규정(동 세칙 제32조)도 배제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외은지점은 금융채를 발행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또한 은행법이 명시적으로 외은지점에 대하여 적용 배제를 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법 제59조 제1항 단서)에 관한 사항도 동 세칙에서 외은지점에 대하여는 적용 배제를 하고 있다(동 세칙 제9조 내지 11조의4).

66) 물론 지점도 본점의 일부라는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본점이 국내 지점을 통하여 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을 것이다.

67) 이에 대해서는 하위 규정보다 상위 규정인 법 해석이 앞서야 한다는 이유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3조를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 이렇게 본다면 외은지점은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15%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게 되고, 15% 한도 이내에서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소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⁶⁸⁾ 그러나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은행법에 명시적으로 외은지점은 자회사를 들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자회사 요건 규정의 체계 정비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은행업감독규정 제49조의2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경우에는 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되거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사모투자전문회사 출자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특별히 자회사로 간주하고 있다. 이는 앞서 본 것처럼 은행법 제37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회사의 정의 기준(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5% 초과 소유 기준)에 대한 예외가 되는데, 법체계상 이러한 예외 사항을 하위 규정인 은행업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므로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5. 자회사 기준의 변경 필요

현행 은행법 제37조는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과 자회사 규제의 목적 두 가지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는 제37조가 추구하는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은행의 자산운용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한 방안으로서 현행 15% 기준을 25%로 상향 조정하고,⁶⁹⁾ 대신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포함하는 방안이다.⁷⁰⁾ 들

68) 이런 점에서 국내 은행과의 차별이라고 주장할 여지도 없으나, 지점으로 진출한 이상 감수해야 할 사항으로 보아야 하며, 본점을 통한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69) 참고로 1998년 2월 은행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은행 자회사 기준은 10%였다. 그리고 상향 조정 시 그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나, 미국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상의 지배(control) 기준인 25%(12 U.S.C Section 1841(a)(1))를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 현행 자회사의 정의는 소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만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15% 이하로 갖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의 경우는 자회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회사의 정의를 ‘실질적 지배’의 관점에서 정의를 하는 방안이다.⁷¹⁾ 이 경우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할 수 있으나, 미국 은행 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상의 ‘지배’(control)의 개념을 원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⁷²⁾ 즉 (i)다른 회사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 2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이거나⁷³⁾ (ii)다른 회사의 이사 과반수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등 당해 회사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다른 회사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25% 이하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경영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자회사로 포섭하게 되어

70) 물론 이에 대해서는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은행의 총투자금액의 한도(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의 투자 한도는 은행 자기자본의 60% 이내, 은행법 제38조 제1호)가 적용되고, 또한 은행 스스로가 위험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은행 건전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리고 자산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이나 출자지분도 포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의 자회사 기준을 달리 두어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금융자회사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15%를 자산운용 한도로 정하고(즉 15% 한도 내에서는 자유로이 소유하는 것을 허용하고) 금융자회사의 기준을 25%로 상향 조정하면서 실질적 지배의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15% 초과 25%까지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소유할 수 없고, 금융자회사를 두려면 25%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25% 이하로 소유하더라도 실질적 지배를 하게 되면 자회사로 포섭되는 것은 여전히 마찬가지가 된다. 이는 금융지주회사법에서도 일단 자회사를 두게 되면 40%(비상장 자회사의 경우) 또는 20%(상장 자회사의 경우) 이상 소유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5%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즉 5% 초과하면서 20% 또는 40%까지는 소유할 수 없게 하는 것)(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비금융회사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15% 기준을 적용하여 15%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으면 자회사로 보는 것(물론 실질적 지배 개념도 적용될 것이다)을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비금융자회사의 경우는 기업구조조정 등의 제한적인 목적에 한해서만 자회사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금융자회사와 차별을 두는 것이다.

71) 진홍수, 앞의 자료, p.157은 자회사의 개념을 은행이 실질적으로 지배(지배·종속관계 형성)하는 회사로 변경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 지배’의 관점을 생각하게 된 것은 진홍수 전 금융감독원 팀장의 도움을 받았음을 밝힌다.

72) 12 U.S.C Section 1841(a)(1). 또한 연방인가은행(national banks)의 자회사(financial subsidiary) 판단 기준도 이러한 지배(control)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Gramm-Leach-Bliley Act), Section 121(a)(1).

73) 자회사 기준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결권이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포함한 것이다.

자회사에 대한 경영평가 및 관리 등 여러 가지 규제를 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게 될 것이다.⁷⁴⁾ 따라서 두 번째 방안을 취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본다. 다만 이러한 상향 조정을 하는 경우, 개별 회사에 대한 주식투자 한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은행 자체적으로 위험관리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은행법 제37조는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 규제를 함으로써 은행의 자산 건전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자회사에 대한 규정을 함으로써 자회사에 대한 거래 규제 및 자회사 경영평가 등 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은행법 제37조와 관련 규정들을 살펴본 결과 개선해야 할 점들이 몇 가지 나타나고 있다. 첫째, 규정 해석상 은행이 해외 자회사를 둘 수 있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금융업종 자회사를 두려고 하는 경우에 금융감독 당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가 현행 문구상 명확하지 않으므로 승인이 필요 없도록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은행 국내 지점이 자회사를 둘 수 있는지 여부가 해석상 나누어지는데, 지점의 성격상 자회사를 두는 것이 맞지 않으므로 입법적 해결을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은행의 자회사 정의 규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자산운용의 폭을 넓혀주기 위하여 현재의 자회사 정의 기준인 15%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25% 기준으로 하면서 ‘실질적 지배’의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적 조치를 함으로써 규제의 합리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제도 개선으로 은행의 업무 효율성을 도모하고, 은행의 해외 진출 및 투자의 활성화를 통하여 은행산업의 경쟁력이 향상되길 기대해 본다.

74) 물론 이에 대해서는 실질적 지배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실질적 지배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어려워 규제의 투명성이 떨어지고, 은행으로서는 예측가능성이 줄어들게 되며, 금융감독 당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는 문제점은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한 실질적 지배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이런 문제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고동원, 「금융 선진화의 기반 구축을 위한 은행법상 몇 가지 규제의 개선 방안」, 『기업법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기업법학회, 2006. 6.
- _____,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쟁점 분석과 개선 과제」, 『금융연구』 제20권 1호, 한국금융연구원, 2006. 6.
- 윤희웅·이진국,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합자회사 형태에 따른 법적 문제점」, 『BFL』 제10호,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05. 3.
- 이철송, 『회사법』 제14판, 서울: 박영사, 2007.
- 정찬형(편집대표), 『주석 금융법 I (은행법)』, 서울: 한국사법행정학회, 2007.
- 진홍수, 「최근 은행법상의 주요 법적 이슈 검토(자료)」, 『은행법연구』 제2집, 은행법연구회, 2006. 12.
-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은행법해설』, 1993.

Legal Review on Regulations on a Bank's Subsidiary in Korea

Dong Won Ko

Article 37 of the Korean Bank Act provides for various provisions such as definition of a bank's subsidiary and regulations on a bank's transactions with its subsidiary. According to the Bank Act, a bank's subsidiary is defined as a "company of which 15% or more of shares with voting rights is owned by a bank," and a bank's subsidiary is divided into a financial subsidiary and a non-financial subsidiary. In order to enhance the reasonableness of regulations on a bank's subsidiary, the following measures are recommended: first, since it is unclear whether a bank may have its overseas subsidiary, a revision of the relevant provisions is needed for clarification; second, because it is unclear whether an approval from a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y is required in case of acquiring shares of a financial subsidiary, measures for clarification are needed; third, since it is controversial whether a foreign bank branch in Korea may have its subsidiary, the provisions for the prohibition needs to be added in the Bank Act; finally, the current 15% ceiling for the bank subsidiary definition purpose should increase to 25%, and the concept of 'de facto control' needs to be adopted to the definition of a bank's subsidiary.

Key words: Bank's Subsidiary, Financial Subsidiary, Non-financial Subsidiary,
Financial Holding Company, Bank Holding Company